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국방위원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요건에 특정 시기 해군 UDT  
교육훈련을 받은 자 추가 〉

■ 박선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21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 춘 태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요건에 특정 시기 해군 UDT에서 교육<br>훈련을 받은 자 추가 ..... | 3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선원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6. 4. 1.
3. 회 부 일 : 2026. 4. 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04년 법 제정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조한 ‘과거 군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라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해군의 경우, 1971년 「해군첩보부대령」 제정 이전에는 별도의 첩보부대 교육체계가 없어 특수임무 무장공작원을 해군 UDT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양성해 왔음. 당시 대북 첩보 및 공작 임무는 실질적으로 UDT 요원이 수행하였으며, UDT 교육훈련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UDT 복무 중 해군 첩보부대로 인사 발령된 경우에는 유공자로 인정되는 반면, 동일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첩보임무 수행을 전제로 UDT 부대에 잔류한 요원들은 형식적인 편제 기준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1955년부터 1971년까지 양성된 UDT 무장공작원 중 상당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법률상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실질적 임무 수행과 희생에 부합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요건에 특정 시기 해군 UDT에서 교육 훈련을 받은 자 추가

[신·구조문대비표]

– 3 –

|         |                                      |
|---------|--------------------------------------|
|         | <u>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br/>자로서-----.</u>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 제1호1)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로 정의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대해 특정 시기에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법 상의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실질적 임무 수행과 희생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먼저,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살펴보면. 1970년 해군 B-6교육훈련 (해군특수전 기초과정)을 받고 UDT 대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10년에 보상금 신청이 기각되었음.

참고로, 해군 B-6교육훈련(해군특수전 기초과정)에는 UDT 외에도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육군, 공군 및 해병대의 인원도 참가하였음.

[B-6 훈련(해군특수전 기초과정) 수료인원(1기~16기)]

| 구 분   | 해 군 | 육 군 | 공 군 | 해 병 대 | 계   |
|-------|-----|-----|-----|-------|-----|
| 인원(명) | 351 | 28  | 6   | 19    | 404 |

주: 개정안의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훈련 인원임  
자료: 국방부

이에 신청자는 서울행정법원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패소하였음.

법원의 판결요지는, UDT는 해군 첩보부대인 UDU와 그 편제와 업무를 달리하고 있는 점, UDU 대원들이 UDT의 교관지원 하에 위탁교육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교육이 UDU 대원들과는 구분되어 실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UDT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군 첩보부대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UDT 대원 중 일부가 UDU 대원으로 차출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음.

즉, UDT는 동법이 규정한 군 첩보부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임.

참고로, UDT(수중과괴대, 특수작전부대)에서 UDU(해상정찰대, 해군첩보부대)로 전환된 인원은 117명이며 이 중 보상인원은 88명임.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총 6건의 동법 개정안이 발의된 전례가 있으며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대표적으로 제18대 국회 김효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군특수전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첩보부대로 파견 또는 전출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에 포함하려는 내용임.

#### [유사 개정안 사례]

| 구분  | 의안번호    | 대표발의  | 발의일         | 주요내용        |
|-----|---------|-------|-------------|-------------|
| 18대 | 1804130 | 김효재의원 | 2009.03.01. | 해군특수전여단 포함  |
| 19대 | 1904050 | 김광진의원 | 2013.03.12. | 유사임무수행부대 포함 |
| 20대 | 207702  | 황주홍의원 | 2017.06.29. | 유사임무수행부대 포함 |
|     | 208902  | 김종대의원 | 2017.08.31. | 특수임무수행부대 포함 |
| 21대 | 2110824 | 민홍철의원 | 2021.06.16. | 특수임무수행부대 포함 |
|     | 2113919 | 성일종의원 | 2021.12.16. | 군전체 포함      |

자료: 국방부

□ 개정안 심사 시 고려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대상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특수임무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임.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신청 거부와 법원판결의 주요 이유인 UDT의 군 첩보부대성의 요건을 배제하기 위해 군 첩보부대와는 별개로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을 받은 자가 즉시 특수임무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4조2)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특수임무수행자 여부가 결정될 것임.

이 때에는 앞서 살핀 UDT의 첩보부대 요건 충족 외에도 “특수임무 관련 교육을 받은 자” 요건에서의 “특수임무”<sup>3)</sup>가 무엇인지

---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음.

동법은 “특수임무”를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국방부와 기획예산처는 이 때의 특별한 희생은 혹독한 훈련과는 다른 의미의 희생으로 보고 있음.

다시 말해, 개정안만으로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즉시 동법 상의 특수임무수행자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둘째, 보상금등의 신청 기한<sup>4)</sup>이 경과한 점임.

동법 제10조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이 경과하였음.

동법 제정 후 총 여섯 차례의 신청 기한 연장이 있었으며 연혁은 다음과 같음.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9. 22.>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 연장 연혁]

| 구 분                    | 제·개정일       | 신청기간<br>(제10조)        | 신청인원   | 법률 제·개정 사유                                                       |
|------------------------|-------------|-----------------------|--------|------------------------------------------------------------------|
| 제정법률<br>제7122호         | '04. 1. 29. | '05. 2. 1.<br>(6개월)   | 5,638명 |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           |
| 제1차<br>개정법률<br>제7978호  | '06. 9. 22. | '06. 11. 1.<br>(12개월) | 1,261명 | 보상대상 확대('95~'02년 사이 특수 임무수행자포함) 하면서 시행일(06.11.1)로 부터 1년간 신청기간 연장 |
| 제2차<br>개정법률<br>제9562호  | '09. 4. 1.  | '09. 4. 1.<br>(31개월)  | 1,632명 | '09. 1월 말 보상받지 못한 신청자가 176명이고 이 중 120명은 유족 찾기 사업으로 대상자로 확인됨      |
| 제3차<br>개정법률<br>제12567호 | '14. 5. 9.  | '14. 5. 9.<br>(6개월)   | 395명   | 미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 추진                                          |
| 제4차<br>개정법률<br>제13779호 | '16. 1. 19. | '16. 1. 19.<br>(3개월)  | 247명   | 신청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신청 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어 신청 기간 3개월 연장                |
| 제5차<br>개정법률<br>제16360호 | '19. 4. 23. | '19. 5. 24.<br>(6개월)  | 513명   | 아직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이미 만료된 신청기간 6개월 연장                  |
| 제6차<br>개정법률<br>제20542호 | '24. 12. 3. | '25. 4. 1.<br>(12개월)  | 788명   | 아직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이미 만료된 보상신청 기간을 1년 연장               |

자료: 국방부

참고로, 현행법상의 신청 기한인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11,889명이 보상을 신청하였고 보상완료 인원은 6,764명, 보상대기인원은 788명이며 보상금액은 7,796억원임.

### [보상 실적]

| 신청인원    | 보상 현황  |          | 보상대기인원 |
|---------|--------|----------|--------|
|         | 보상완료   | 보상금액     |        |
| 11,889명 | 6,764명 | 7,796억 원 | 788명   |

자료: 국방부

□ 국방부에 따르면, 동 법률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참고자료 참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소정의 훈련과정이나 고된 훈련을 받은 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부 특수작전 부대를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부대<sup>5)</sup>의 보상 요구 등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기획예산처는 동법 제정 당시 특수임무수행자는 북파공작원으로 한정하였으므로 UDT 등을 특수임무수행자에 포함 시 동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UDT는 UDU와 편제와 임무가 다를 뿐만 아니라 UDT 요원들에 대한 불법 모집 등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혹독한 훈련을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07 |

5) UDT와 유사한 특수작전 부대 : 육군 특수전사령부, 해군 해난구조전대, 공군 특수임무대대 등